

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개발 및 학습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 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선진 교수·학습 지원 체제에 관한 연구 활동
2. 교원들의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3.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4. 교수·학습 지원 시스템 설계·운영·교육
5.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컨설팅 및 출판
6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3조(조직 및 임면) ① 교학지원처에 센터를 두며, 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한다.

② 센터에 연구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
제4조(업무)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연구원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장 교수학습지원위원회

제5조(설치)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당연직 위원이 되고, 다른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3. 센터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장 회계

제9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대학교 회계연도로 한다.

제10조(센터의 운영경비) 센터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우리 대학교 보조금
2.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

3. 기타의 수입

제11조(회계) 센터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(예산 및 결산) 센터장은 우리 대학교의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예·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장 기타

제13조(보칙)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(제정 2014. 1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